



EU 통관 환경 보고

2012. 4

성태곤 EU 관세관
(tksung@customs.go.kr)

목차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2. EU의 수입통관 절차

3. EU의 통관행정의 특징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가. 관세법령

- EU 27개 전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법령 시행
 - 원산지, 통관절차, 보세구역, 관세담보 및 징수 등을 규정
 - 다만, 관세법령 위반시 조사·처벌 등은 개별 회원국 국내법에서 규율
- 관세법령
 - the Community Customs Code (Council Regulation (EEC) No 2913/92)
 - the Code's implementing provisions (Commission Regulation (EEC) No 2454/93)

나. 세관신고

- 주체 : 화주 또는 대리인(일반적으로 EU내 사업 등록 필요)
- 지역 : 물품소재지(세관에 제시 가능한 곳)
- 방법 : 전자신고, 서면신고, 구두신고(휴대품 등)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다. 단일행정서식 (SAD :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)

- 수출입신고서의 통일로 무역업체의 편의성 제고 및 회원국간 정보교환 용이

라. 관세채무

- 개념 : CN, TARIC 등에서 규정된 수출입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
- 발생 : 자유유통(Free Circulation)을 위한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시
- 주체 : 수입신고자 또는 대리인
- 예외
 - **불법반입시**
[관세채무] 불법물품 반입시 발생
[채무자] 반입한 자, 반입에 참가한 자, 획득 및 보관자
 - **세관승인 없이 사용시**
[관세채무] 세관 감시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
[채무자] 불법 반출한 자, 반출에 참가한 자, 획득 및 보관자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마. 일시 장치

- 장치기간 : 수입신고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
 - 해상수입 : 개괄신고한 날로부터 45일
 - 해상외의 수입 : 개괄신고한 날로부터 20일
- 장치장소 : 세관창고, 수입자 또는 화물 보관인의 창고 등에 장치
- 장기기간 경과시 처리 : 수입자 또는 물품 소유자가 비용 부담
 - 세관이 감독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
 - 일정한 조건하에 판매 또는 멸각 등

바. 품목분류 및 관세율

1) WCO HS협약의 수용절차

- 2011.10.28, Commission Regulation (EU) No 1006/2011을 통해 **복합품목분류표(CN: Combined Nomenclature)**를 발표(2012.1.1부터 시행)
 - HS 6단위는 협약 개정안과 동일, 8단위까지 운영하며 기본관세율을 규정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바. 품목분류 및 관세율

- **통합관세율표 (TARIC :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) :**
복합품목분류표 8단위에 2단위를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운영
 - 관세율 : 특혜관세, 관세율 할당, 관세유보 등
 - 농업 : 농산물 구성요소, 설탕·밀가루 등에 대한 관세부과금, 상계관세 등
 - 무역 : 덤핑방지관세, 상계관세 등
 - 수출입규제 : 수출입금지 및 제한 품목, 수출입량 제한 등



- (http://ec.europa.eu/taxation_customs/dds2/taric/taric_consultation.jsp?Lang=en) 참조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바. 품목분류 및 관세율

2) 개별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

- 복합품목분류표 외에 **주해서를 운용**하여 품목분류에 참고

* 최신 버전 : Explanatory notes to the Combined Nomenclature of the EU (2011.5.6)

- 개별 물품의 **복합품목분류표 제, 개정**

- [근거] Council Regulation (EEC) No 2658/87
- [시기] EU회원국의 요청, 관세총국 판단 등
- [기관] 관세총국내 Customs Code Committee
- [절차] 27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여 제, 개정 수행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바. 품목분류 및 관세율

3)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(BTI : Binding Tariff Information)

● 처리절차

- [신청자] : 서면양식으로 교부신청
- [세관당국] : 가장 빠른 기간내 서면통지, BTI 사본을 EU집행위 송부
 - * 접수일 이후 3개월내 정보제공을 못할 경우, 세관당국은 지연사유 및 통지기간을 알려주어야 함
- [EU집행위] : DB를 구축하여 회원국 및 일반인에게 공개

● BTI 효력 : 모든 회원국을 구속

- [효력범위] : 정보 소지자, 정보가 제공된 날 이후에 세관절차 완료 물품
- [BTI 소지자 의무] : 신고물품이 정보내용과 일치 하다는 점을 증명
- [유효기간] : 교부된 날로부터 6년
- [무효사유] : 신청자에 의해 부정확 혹은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때

1. EU의 통관행정 개요

사. 세관현대화법 (Modernized Customs Code : 2008.4 제정)

- 배경 : 신속통관 + 국민건강과 안전확보의 **2가지 미션을 동시에 수행**
- 주요내용 : 세관 통관절차와 통제 수단의 현대화 추진 계획
 - 합리화 : 법적 구조 및 세관 규정과 절차
 - 표준화 : 경제운영인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강조를 통한 세관 규정과 실행
 - 간소화 : 전산화를 통한 세관절차, 특히 EU 차원에서의 관리 가능성
 - 전산화 : 모든 세관신고와 정보 교환
 - 상호운용성 : 각 회원국의 전산 시스템 => 위험관리와 세관간 협력을 통한 강한 통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무역원활화 추진
- **2008. 6. 24 발효** 되었으나, 전산화 등 새로운 내용을 27개 회원국 전체에 적용 및 실행규정 마련 등에 시일이 소요됨으로 **현재 미시행**

2. EU의 수입통관 절차

가. 자유 유통 (역내물품)

- 서류 · 물품검사, 납세 또는 납세유예절차의 완료 시점에서 역내 자유유통 가능
- 세관은 독자적 또는 신고인 요청으로 통관후 신고서 등을 사후 심사할 수 있음

나. 임시 수입

- 역외물품이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어떠한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재수출될 경우,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
- 임시 수입 허가기간과 관련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개월의 기한
다만, 세관당국은 동 기한을 단축하거나 합리적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

2. EU의 수입통관 절차

다. 역내 가공

- 역외 수입물품을 원료로 EU내에서 제조한 물품을 역외로 재수출 시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유예 및 환급 가능
 - * [적용대상] 가공생산물로서 가공작업으로부터 생산된 모든 물품
- **세관통제하의 가공** : 고세율의 원재료로 저세율의 제품을 역내에서 가공하여 자유 유통시킬 경우, 특별한 세관 통제를 받음 <- **EU집행위에서 별도 규정**
 - * [세율차이 사례] PVC 재료의 관세율은 8.3% <-> film screen의 관세율은 2.7%

라. 역외 가공

- 역내물품을 EU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출하여 역외에서 제조, 가공한 후 수입시 재수입된 역외가공생산품은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

3. EU의 통관행정 특징

가. EU집행위 관세총국과 27개 회원국 세관당국의 2중구조

- EU집행위 관세총국(Taxation and Customs Union)에서 회원국의 수출입통관행정 총괄
* Director-General 산하에 5명의 Director로 구성

- 통관정책 및 전자세관
- 통관규정 및 세관간 일치
- 통관절차, 품목분류, 관세율 및 감면

- IPR
- 위험관리 및 보안
- 원산지, 국제협력

- 통관 관련 규정 등 제·개정, 통관절차상 세관당국간 이견 조정, 통관행정 발전방향 수립 등 중앙정부 역할 수행
- 그러나, 개별 회원국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,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통관의 신속성, 정확성 등에 차이 발생

▶ EU 관세법령 외, 개별 회원 관세당국의 세부적 업무처리절차 및 관행 등 숙지 필요

3. EU의 통관행정 특징

나. 품목분류의 경직성

- 27개 회원국 관세수입의 75%가 EU 집행위 예산으로 산입
- 따라서 품목분류시 기술발전 등 상황변화 고려보다는 관세수입확보 목적으로 보수적 접근, 업체에게 불리한 입장

- ▶ 품목분류 실득논리 개발, 적극 설명 등 노력 필요
- ▶ 애로사항 발생시 관세평가분류원, 해외통관지원센터 또는 관세관에게 협조 요청

다. 동구권 세관당국의 능력배양 필요

- 아직까지 선진화된 통관시스템 및 세관직원의 서비스 인식 등은 미비한 상태
 - 일부 국가는 청의 지시, 지침 등이 일선세관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례 발생
 - * 2004년 10개국(폴란드, 헝가리, 체코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사이프러스, 몰타)
 - * 2007년 2개국(루마니아, 불가리아) EU에 가입

- ▶ 동구권과의 세관협력 강화, 업체에서는 일선세관과 친밀감 제고 필요

3. EU의 통관행정 특징

라. OLAF(European Anti-Fraud Office, 부패방지국)의 역할 강조

- EU전체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사기, 뇌물사건, 기타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직접 수사 담당
 - 수출입통관 관련 여러 회원국과 관련된 밀수사건, 특혜/비특혜 원산지 검증 활동에 주력
- 한-EU FTA 발효 이후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위반하는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분석 강화중

- ▶ 업체 스스로 원산지 기준의 철저한 준수와 원산지 검증활동의 강화 및 관세청의 각종 FTA지원시스템 활용 필요

감사합니다

